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기 관 경 고

제 목 ○○천 일반야영장 및 ○○테니스장 부지선정 등 사업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내 용

1. ○○천 일반야영장 설치공사 등 부적정

위 관서에서는 ○○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천 일반야영장 조성사업을 [표1]과 같이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부적합한 입지선정으로 운영일수와 이용률 저조, 공사 부실시공, 야영장내 안전관리 미흡, 사후관리를 부실 등 부 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1] 아산 ○○천 일반야영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주요사업 내 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일반야영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015.7.17. ~ 12.22.	20	-	20	실시설계	(주)○○○○○○○○
일반야영장 조성공사	2015.12.29. ~ 2016.6.27.	996	498	498	야영장조성 8,115㎡(67면)	○○○○○○(주)

※ 아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가. 부적합한 입지선정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 따르면 일반야영장이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야영장업 공통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야영장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별표 7]에서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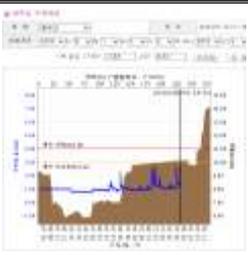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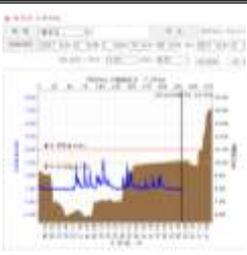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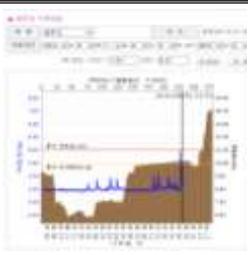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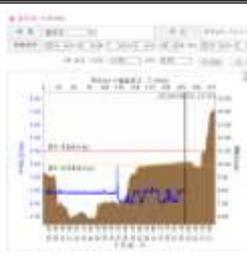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한 야영장 부지를 선정하고 또한 야영장 안전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천 일반야영장 부지를 선정하면서 아래 1)~3)과 같이 야영장 위치선정에 있어서 야영장 부지로 부적합함에도 선정하여 야영장의 운영의 안전성 등이 우려되고, 이용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 지역 언론 및 이용객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 야영장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당시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환경 변화 반영 및 홍수피해가 집중되는 중소하천 및 주요지천에 대한 홍수 예보 확대지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영장이 위치한 ○○천이 홍수예보 확대 지점으로 선정된바 있고, 위 야영장 부지는 [표2]와 같이 2007년2회, 2010년 3회, 2011년 4회, 2012년 1회, 2014년 1회, 2017년 1회 침수가 발생하는 등 침수 빈도가 잦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야영장 입지로 부적합 함에도 사전 안전성 검토 등의 과정 없이 야영장 부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실제로 ○○천이 침수되어 야영을 하다 침수된 피해자가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신청을 하는 등

침수·유실 사례가 발생된바 있다.

[표2] 아산시 ○○읍 ○○리 (○○교 수위관측자료)

17. 7. 15(○○천범람)수위	①`10. 7월(홍수주의보)	②`11. 7월(홍수주의보)	③`12. 7월(홍수주의보)	④`14. 7월(홍수주의보)
				

※ 자료근거 : 금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수위관측 자료 갈무리(○○천-○○교 관측값)

2) 위 야영장부지 ○○천 하천점용허가 신청 당시 생태자연도 및 법적보호종에 대한 영향예측 결과¹⁾에 따르면 ○○천은 큰고니, 큰기러기 등이 서식하는 주요 철새도래지로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우려²⁾ 지역이고, 실제로 2016. 12. 23.부터 2017. 4. 23.까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휴장을 하는 등 부적합한 부지로 예견되어있었는데도 야영장 부지로 선정되었다.

3) ○○천 야영장 조성계획에 따르면 야영장을 조성하여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야영장 선정부지는 쾌적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그들이 전혀 없어 땡별 야영장이고, 야영장에 4차선 도로가 연접(현장확인 결과 도로로부터 약 100m ~200m에 야영장 위치) 하여 차들이 평균 80Km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어 소음이 발생하는 등 부지로서 부적합³⁾하여 지역 언론 및 동호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1) ○○천수계(○○천·○○천) 하천기본계획(2012.○.,국토해양부 ○○○○○○○○청) 검토자료
 2) ○○천 야영장 현지확인결과 대상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예상지역으로 AI 방역을 위하여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라는 플래카드가 설치되어있다.
 3) 야영장 현장방문 당시 출장자 운행차량에 대한 평균속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부적합 요건으로 지역언론(○○일보, ○○일보 2회, ○○투데이) 등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나. 야영장 공사 부실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 19.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사감독 공무원 및 준공공사 공무원은 야영장 설치공사가 당초 설계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완공되었는지 확인하고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4]와 같이 ○○천 야영장 시설공사의 일부가 당

초 설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등을 부실하게 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표4] 아산 ○○천 일반야영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공종	시공(mm)		공사비 (천원)	부실내역
	설계	실제시공		
경계엷지	H=178, W=32, T=2 단가(m) : 12,000원	H=80, W=0, T=2 단가(m) : 8,500원	11,072	당초설계보다 작은 규격사용
화장실 (2개소)	H=320cm중 30cm가 지중으로 묻히도록 설계	20cm만 땅속으로 묻힘	97,548	당초설계보다 지중에 덜 묻히게 시공

※ 아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다. 야영장내 안전관리 미흡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7]의 규정에 따르면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추도록 되어있다. 이에 근거하여 야영장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예방 기준, 전기사용 기준, 대피관련 기준 등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아래 1)~3)과 같이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1) 화재예방기준에 따르면 천막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고, 또한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하나, 현지 확인 결과 감사일 현재까지 소화기⁴⁾와 방화사 시설 등이 없이 운영하고 있다.

2) 대피관련 기준에 따르면 야영장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

4) 아산시 ○○과 소명에 따르면 분실을 우려하여 소화기는 관리사무소에 일괄 보관하고 있다고 하나 야영장과 원거리로써 화재발생시 소화기 사용의 실효성이 없음

거나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여야 하나 대피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긴급재난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강제대피 조치 계획 등의 매뉴얼이 없어 실제로 2017. 7. 4. 곡교천 범람에 따른 야영장 침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라. 캠핑 동호인들의 외면으로 야영장 이용률 저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장한 ○○천 야영장은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없고, 도로와 연결하여 자동차 소음이 많은가 하면,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의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시설 미비 등으로[표5]와 같이 67면 전체가 이용된 횟수가 단 1회뿐이고, 한 면도 이용이 없는 횟수가 많은 것을 볼 때 이용률이 저조하여 동호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등 부적합한 위치 선정과 시설 미비 등으로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5] 아산 ○○천 일반야영장 이용률 현황

구 분	계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면)	1,000	-	-	-	58	166	107	329	243	78	19	
'17	이용	2,081	-	53	337	213	6	87	445	423	517	
	최고 (날짜)	-	-	22면 (4.29)	64면 (5.27)	58면 (6.3)	6면 (7.1)	21면 (8.26)	67면 (9.21)	66면 (10.6)	64면 (11.4)	-
	최저 (날짜)	-	-	1면 (4.27)	0면 (5.1)	0면 (6.14)	(7.4~8.1 1)휴장	0면 (8.24)	0면 (9.11)	0면 (10.10)	0면 (11.9)	-

※ 아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마. 야영장 사후관리 부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하자가 발생되면 관련법 등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천 야영장 개장이 1년이 지난 현재 야영장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화단부분 야생화(맥문동, 수효초)는 모두 훼손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도로 안내표지판 및 차선규제봉 등이 훼손되었는데도 하자 보수 등을 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2. ○○테니스장(전국체전 경기장) 부지 선정 및 사업 부적정

충청남도에서는 2016년도에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종목별 경기장을 선정⁵⁾하였고, 이 가운데 아산시에서는 테니스 경기 등 15종목을 배정받아 24개소에서 경기장을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해 체전을 개최하였다.

이에 아산시(○○○○과)에서는 테니스 경기 개최를 위하여 아산시 ○○읍 ○○리 ○-○번지 내 ○○천 변에 위치한 ‘○○테니스장’에 대하여 ○○○○회로부터 공인을 받기 위해 경기장 규격 확보 및 클레이(clay)코트에서 하드(hard)코트로 변경 등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전국체전 개최 이후에는 ‘아산시 체육시설’로 동호인들에게 개방하여 사용 중에 있다.

5) 충청남도 ○○○○과-○○○○호(2013. ○. ○.)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경기장 선정 알림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2015. 4. 13.부터 2015. 9. 23.까지 (주)○○○○○ (대표 ○○○) 외 1개사와 용역계약 체결(사업비 46,130천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2015. 12. 16.부터 2016. 8. 25.까지 ○○○○○○(주)(대표 ○○○)외 3개사와 공사계약을 체결(총 사업비 1,516,041천원)하여 “○○테니스장 조성공사”를 추진 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 지침(국토교통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정을 집행할 때에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테니스장’을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선정하고, 신축 조성함에 있어 경기장 주변 여건이 하천변에 위치한 것에 대해 우기 시 하천

범람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하고, 침수 등에 대비한 공법 등을 검토· 선정 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전국체전 개최('16. 10. 7~ 10. 13.) 이후 2017. 7. 15.~7. 16.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아래 [사진1]과 같이 ○○천이 범람하였으며, 상기 야영장과 더불어 ○○테니스장이 침수하기에 이르렀다.

[사진1] ○○테니스장 부근 ○○천 범람(2017. 7. 27)



※ 자료근거 : 2017. 7. 16. 보도기사(○○투데이 등) 사진 갈무리

이에 ○○테니스장 총 16면 중 아래 [사진2]와 같이 총 4면이 침하 및 표면 손상(1,040㎡) 등을 비롯하여, 조명 분전함(10개소)이 손상되어 아래 [표6]과 같이 총 131,167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진2] 테니스장 침수에 따른 손상된 코트 도면



※ 자료근거 : ○○테니스장 현장조사 실시(2017. 11. 20.)

[표6] ○○테니스장 침수 손실 및 보수 비용 등 (계약 공사비 산출기준)

공종	내역	단가(원)	수량	손실금액(원)	보수비용(원)	비고
합계	테니스코트 1,040㎡ [260㎡/면 × 4면]			131,166,864	163,166,864	
아스콘포장	설치비	5,316	1,040㎡	5,528,640	5,528,640	
	재료비	12,561	1,040㎡	13,063,440	13,063,440	
	폐기물처리	42,271	704 ton	29,758,784	29,758,784	
우레탄포장	재료비	69,900	1,040	72,696,000	72,696,000	설치비 포함
전기	조명분전함	1식	10개소	10,120,000	10,120,000	기보수 (`17. 8.31.)
	분전함이설	3,200,000	10개소		32,000,000	기 설치비용으로 계상

※ 자료근거 : ○○테니스장 조성공사 계약 내역 기준 산출 자료

아울러 테니스장의 사용을 위해 손실된 부분의 보수와 향후 침수에 대비하여 조명 전기분전함 이설 및 하드코트의 기초부 보강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신축이후 약 1년 만에 위 [표6]과 같이 약 163,166천원의 보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니스장’이 위치한 ○○천에 대해 최근 10년간 수위 관측 값을 확인한 결과 상기 [표2]와 같이 이번에 범람한 수위를 기준으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차례나 범람한(홍수주의보) 사례가 확인⁶⁾되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 등을 확인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경기장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도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상기와 같이 향후 ○○천이 지속적으로 범람할 경우 동일한 피해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투입 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6) 2007년 2회 / 2010년 3회 / 2011년 4회 / 2012년 1회 / 2014년 1회 / 2017년 1회

한 상태에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기관경고] ○○천변 야영장 및 테니스장의 부적절한 입지선정으로 예산 낭비, 부실 시공, 관리 미흡 등 사업의 전반적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 경고 하니, 앞으로 국비 및 지방지 등 예산이 수반된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철저한 기초조사와 기관단체 및 관련 이용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정한 부지선정 등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당초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야영장 사업공정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대로 정산하여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테니스장은 향후 ○○천의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에 대비한 보수·보강 및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손실부분 등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